◉재정경제부고시 제2026-113호

2026년 4월 7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1월 06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관세영역 : 중국(공급국), 대만(관세영역)

나. 부과 대상 물품 : 고체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caustic soda) solid)

○ 관세품목분류(HSK) : 2815.11.0000

○ 액체 수산화나트륨을 고농도로 농축·가공하여 제조한 백색의 고체 수산화나트륨으로, NaOH의 화학식을 가진 것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관세영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중 국 (공급국)	1. 동루이 (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빈화그룹 (Befar Group Co., Ltd.) 나. 하이웨 (Binhua Haiyue (Qingdao) Trading Co., Ltd.)	3.66
	2. 스카이 임펙스 (Skyey Impex Limited)	22.21
	3. 유니라이온 (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	19.93
	4. 그 밖의 공급자	17.58
대 만 (관세영역)	5. 포모사 (Formosa Plastics Corporation)	38.89
	6. 그 밖의 공급자	38.89

라. 부과기간 : 2026. 11. 6. ~ 2027. 3. 5.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6년 9월 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별첨 자료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법령/훈령・고시/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1.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조사보고서
2.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의결서

3.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